

## 제7장 경제 및 기술 협력

### 제7.1조 기본원칙

1. 양 당사국 간 무역, 투자 및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 협정의 완전한 활용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 및 기술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하면서, 양 당사국은 그들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호 관심 및 이익 분야에서 협력 이니셔티브를 수행한다.
2. 양 당사국은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각 정부 간 협력을 수행하며, 협력 이니셔티브를 확인하고 이행하는 데 민간 분야, 학계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하도록 노력한다.
3. 이 협정에 따라 수립된 것 외에 기존 경제 및 기술 협력 메커니즘의 가치를 재확인하면서, 양 당사국은 그들의 기존 협력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이행을 존중하고 장려한다.

### 제7.2조 협력의 범위

1. 양 당사국은 상호 이익을 기초로 다음 분야에 집중하여 협력 활동을 발굴하고 수행한다.
  - 가. 보건 및 생명 과학 관련 제조와 기술 금속 가공에 대한 협력을 포함한 산업 개발
  - 나. 혁신과 연구 및 개발

- 다. 소상공인 · 중소기업
  - 라. 영화에 대한 협력을 포함한 창의 및 문화 산업
  - 마. 지식재산
  - 바. 표준,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
  - 사.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
  - 아. 전자상거래, 그리고
  - 자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분야
2. 협력 분야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우선순위 분야를 포함한다.
3. 양 당사국은 또한 부속서 7-가, 부속서 7-나 및 부속서 7-다에 규정된 협력을 추구한다.

### 제7.3조 협력 형태

경제 및 기술 협력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.

- 가. 정보 교환
- 나. 우수 관행 공유

- 다. 인적자원 훈련
- 라. 전문가 교류
- 마. 무역 및 투자 증진
- 바. 비즈니스 포럼
- 사. 기술 지원
- 아. 공동 연구 및 개발
- 자. 기술 및 새로운 사업 모델 이전, 그리고
- 차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

#### 제7.4조

##### 자원

- 1.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, 이 장의 경제 및 기술 협력의 이행을 위하여,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활용하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재정적 자원 및 그 밖의 자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.
- 2. 양 당사국은 상이한 발전 수준과 역량을 고려하여, 상호 합의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 비용을 부담한다.

#### 제7.5조

##### 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

1.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 및 운영을 목적으로, 양 당사국의 고위 공무원이 공동 의장을 맡는 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2.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하나,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.
  - 가. 협력을 위한 제안을 검토, 평가하고 승인하는 것
  - 나. 이 협정 내에 구성된 각 위원회가 개발한 협력 작업 계획을 수집하고 통합하는 것
  - 다. 양 당사국 간 협력 분야를 합의하고 개발하는 것과 협력 개발을 위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
  - 라. 협력 사업과 활동의 이행에 대한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
  - 마. 이 협정 제11.1조(공동위원회)에 따라 공동위원회에 정기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, 그리고
  - 바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
3.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협력 사업 및 활동의 이행을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과 지침을 활용하기로 합의한다.
4.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민간 및 공공 부문 간 협의를 촉진하고 무역, 투자 및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데, 「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필리핀공화국 통상산업부 간의 통상 및 경제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」에 따라 설치된 무역 및 경제 협력 공동위원회의 역할을 인정한다.
5.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위원회는 최소 연 1회 회합한다. 회의는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.

6. 양 당사국은 기존의 양자 및 지역 경제 협력 사업, 이니셔티브와 활동에 기초하고 이를 보완한 이행약정에 대하여 합의한다.
7. 위원회는 이 장 및 이행약정에 따른 협력사업 및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#### 제7.6조 분쟁해결의 비적용

이 협정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.

## 부속서 7-가

###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<sup>1</sup>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협력

#### 일반 규정

1.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, GATS 및 그 밖의 세계무역기구 대상협정에 따라 국가 이익을 확보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립할 각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한다.
2. 양 당사국은 코로나바이러스 2019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)가 글로벌 공급망 내 상품, 서비스 및 인력의 지속적인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인정한다.
3. 양 당사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팬데믹을 포함한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의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, 그들의 개발 목표에 따른 적절한 활동의 개발 및 수행의 가능성을 인정한다.
4. 양 당사국은 글로벌 공급망 내 상품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수 인력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며 무역 및 투자에 대한 협력 활동 및 프로그램을 이행함으로써 양국의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, 미래의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을 다루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한다.

#### 글로벌 공급망 내 상품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

5. 양 당사국은 무역원활화협정 및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필수 상품, 특히 식품, 개인보호장비 및 그 원재료를 포함한 중요 건강 및 의료 용품의 이동을 가능한 한도에서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.
6. 양 당사국은 식품 · 의약품 · 중요 의료제품 및 그 원재료를 포함한 필수 상품에

---

<sup>1</sup> "팬데믹"이란 2020년 3월 11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와 같이,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한 질병을 말한다.

대하여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및 비관세 장벽의 도입을 자제하도록 노력하고, 그러한 조치가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며 균형적이고 투명하며 일시적이고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합치하도록 보장한다.

#### 필수 인력 이동의 원활화

7. 양 당사국은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을 방지하고 그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따라 공중 보건을 보호함을 보장하면서, 국외 출장을 포함한 필수 인력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.

8. 양 당사국은 또한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그리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, 공급망 차질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수적인 국경 간 이동을 포함하여 서로에 대하여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고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.

9. 양 당사국은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이들의 존엄, 건강 및 안녕, 안전과 공정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면서, 상대방 국가에서 머무르고 일하며 공부하는 서로의 국민에게,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적절하고 적정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을 증대하도록 노력한다.

####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의 원활화를 위하여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으로부터 발생하는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최소화

10.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한 대로, 무역 및 투자에 대한 협력 활동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할 수 있으며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회복을 원활하게 하고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 우수 관행을 공유할 수 있다.

11. 양 당사국은 필수적인 의료제품과 중요 농산물 및 식품과 같은, 그 원재료를 포함한 필수 상품 및 서비스의 제조 및 공급을 안정화하고, 디지털 전환을 원활히 하며 금융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강화를 포함한 양 당사국의 사회경제적 회복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민간 부문과 함께 이행하도록 노력한다.

12.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 및 투자에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채택할 때, 시의적절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고 우수 관행을 공유하도록 노력한다.

## 부속서 7-나

### 백신에 대한 협력

#### 일반 규정

1. 양 당사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와 같은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야기한 영향을 인식하면서, 팬데믹을 종식하고 미래의 세계적인 보건 위협을 다루기 위하여 백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.
2. 양 당사국은 또한 코백스 퍼실리티(COVAX facility)를 포함한 국제 기관과 함께 현재와 미래의 세계적인 보건 위협을 다루기 위하여 백신 생산 및 관련 공급과 제조 혁신을 확대하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한다.

#### 협력 활동

3.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각국의 강점을 결합하여 세계적으로 백신 부족 시에 백신 생산과 글로벌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양 당사국의 기업 간 협력을 증진 할 것이다.
  - 가. 백신 제조
  - 나. 백신 생산을 위한 원재료 공급
  - 다. 백신 공동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개발
  - 라. 백신 개발과 관련된 역량 강화와 지식 및 기술 이전, 그리고
  - 마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
4. 양 당사국은 임상 시험 및 백신의 전체 승인에 대하여 국내 규정, 관행 및 신청 과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것이다.

5. 양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를 유지하면서 백신 및 백신 생산용 원재료에 대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도록 노력할 것이다.

부속서 7-다  
기후변화에 대한 협력

일반 규정

1. 양 당사국은 기후변화와 그 부정적 효과가 긴급하고 집단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인류 공동의 관심사안인 것을 인정한다.
2. 양 당사국은 「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」(이하 “기후변화협약”이라 한다)이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대하여 확고한 기반을 마련함을 재확인하고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는 데 「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」와 「파리협정」이 중요함을 인정한다.

협력 활동

3. 양 당사국은 각국의 국가결정기여의 이행에 따라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완화하는 역량을 향상하는 데 협력을 개발하고 강화하기로 합의한다.
4. 양 당사국은, 권한 있는 당국과 조율하여 국가결정기여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적응·완화 프로그램 또는 사업을 증진하고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기후 완화 투자를 지원하고 시장과 비시장 메커니즘의 혜택을 상호 모색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이전된 완화성과를 사용하는 수단을 찾기로 합의한다.
5. 양 당사국은 국가 재고의 측정, 보고 및 검증을 위한 역량 강화 활동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.
6. 양 당사국은 기후행동에 대한 우수 관행과 기술적 노하우 교환 및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관심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세미나, 심포지엄, 워크숍 및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다.